

Fi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 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 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
중도해지 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 <td>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</td> 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5%</td> </tr> <tr> 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60%</td> </tr> <tr> <td>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예치기간	이 율	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	기본이율 × 70%
예치기간	이 율													
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												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												
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												
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												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	기본이율 × 70%			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								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<p>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p> <p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p> <p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p>													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													
만기해지 사전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의 자동재예치 가능 -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 - 재연장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자동재연장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													
연계·제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													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- ❶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하는 경우**, 가입기간에 따라 **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예 아니오 ➡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- ❷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께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월 일 예금주:

(서명/인)

대리인:

(서명/인)